



DEPARTMENT OF THE ARMY
HEADQUARTERS, 2D INFANTRY DIVISION/ ROK-US COMBINED DIVISION
UNIT #15041
APO AP 96258-5041

EAID-CG

2021년 6월 10일

수신: 하기 배부처 참조

제목: 지휘 지침서 #9: 건전 음주 수칙

1.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건전 음주 수칙 관련 지침을 대체함.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.
2. 사단 내 전 인원은 빈틈없는 준비태세로 유사시 즉시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. 만 21 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 한 모든 장병은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으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건전한 음주 수칙을 지킬 의무가 있음. 이는 미 2 사단 전 장교, 부사관, 병사들에게 해당되는 지침임.
3. 미육군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음주 문화와 습관은 준비태세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임. 또한 약물남용으로 유도될 수 있는 잠재적 계기로 발전 가능함. 지휘관은 해당 인원의 위험성 판단 후 미육군 규정 600-85 에 의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야 함.
4. 혈중 알코올 농도 0.15% 이상의 음주 행위는 지휘조치를 수반함. 합법적인 음주측정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.15% 이상을 기록하면 해당 인원의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. (a)관련 비취인가 정지; (b) 지휘직 정직; (c) 필요시 영외 출입증 정지.
5. 본 지침서의 명시된 정직은 음주행위에 따른 조사 전 내려지는 임시적 조치임. 지휘관은 정기적으로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내려진 조치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조치 결심을 위한 상황별 요소를 판단 및 검토해야 함.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는 사전에 소속 법무팀과 자문 및 협조 후 시행할 의무가 있음. 하지만, 상당한 근거에 전제 하에 지휘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.

DAVID A. LESPERANCE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